

'98 농림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 요약(축산편)

(자료출처 : '98 농림사업 시행지침서, 농림부)

- 홍 보 부 -

1.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(자율)

1) 사업량 : 1,000개소

2) 총사업비 : 117,100백만원(용자 82,000백만원, 자담 35,100백만원)

3) 지원대상 : 양돈농가, 종돈업경영자, 축협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

4) 지원내용

○기반시설 : 진입도로, 부지정지, 용수개발, 전기인입시설 등

○사육시설 : 축산 신축 및 증개축, 급이·급수 시설, 환기·보온시설 등

○기계·기구 : 돼지 사양관리, 생산물 처리 등에 필요한 기계·기구

○기타 : 창고, 관리자, 일반폐사축 소각시설(전염병에 걸린 가축 처리용은 제외) 및 기타 돼지사육에 필요한 시설

5) 지원기준 : 농가당 3억원 이내, 법인은 자기 자금의 200% 이내,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 자금의 400% 한도

6) 지원조건 : 연리 5%, 5년거치 후 10년 균분상환

2. 축산분뇨 처리사업

1) 사업량 : 6,344개소

2) 총사업비 : 170,375백만원

3) 지원대상

○개발시설

- 공동시설에 속하지 않는 개인 축산농가
- 돼지개량사업의 "전문종돈업 축산사업 대상자"로 선정된 원종돈(GGP)농장 및 종돈(GP)농장

○공동시설, 톱밥제조시설

- 축산단지, 지역축협, 영농조합법인, 계열주체 등 축산농가로 구성되어 공인된 단체

○정착촌 구조개선 : 나환자 정착촌

4) 지원내용

○개발시설 : 퇴비화시설, 정화방류시설 및 저류조와 부대시설

- 퇴비화 시설 : 저장액비화, 퇴비사, 건조장,

통풍식·교반식·건조식 축분 발효시설 및 기타 적절한 퇴비화방법

- 정화방류시설 : 활성오니법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(간이정화조 설치대상에 저류조시설 포함)

○부대시설 :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퇴비처리 장비

- 퇴비처리장비 : 소형 톱밥제조기 및 왕건분쇄기(왕겨팽연화시설 포함), 액비탱크, 스키드로다 등

○톱밥제조시설 : 공동시설에 수분조절제 수급을 위한 톱밥제조시설

5) 지원규모

○총사업비 : 돈사면적 평당 74,000원을 적용해 총사업비 산출(축사 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으로 함)

○돼지 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, 전체 돈사가 무창돈사일 경우에만 1.4배를 가산하여 총사업비 산출

6) 지원한도

○개별시설 : 돼지 : 3억 이내, 한우·젖소·닭 : 2억이내

○공동시설 : 돼지 : 15억 이내, 한우·젖소 : 8억이내, 닭 : 10억 이내

○톱밥제조시설 : 1억5천만원 이내

7) 지원조건

○개별시설, 공동시설, 톱밥제조시설 : 보조 50%, 융자 30%, 자담 20%

- 융자조건 : 3년거치 7년 균분상환, 연리 3%

- 정착촌 구조개선 : 보조 100%

8) 부대시설의 단가

○퇴비처리장비 : 10백만원

○분뇨운반장비 : 30백만원

3. 축산단지 조성사업(공공)

1) 사업량 : 32개소(돼지)

2) 총사업비 : 39,289백만원(기금보조 5,982백만원, 기금융자 21,520백만원, 지방비 1,709백만원, 자담 10,078백만원)

3) 지원대상

○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이전(당해 축종의 기존 축산농가에 한함)하여 전업 규모화 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자

○이미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 지정된 단지 또는 기 조성이 완료된 단지로서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자

○기존의 가축 집단사육 지역에서 시설을 보완하여 단지화하고자 하는 자

○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단지

4) 단지구성 요건 : 돼지·닭-5호 이상~10호 이내(한우 : 3호 이상)

5) 사업기간 : 98~99년

6) 지원규모

○일반농가 : 호당 3억원 이내(산란계 5억원 이내)

○영농조합법인 : 자기 자본의 200% 이내

○축협조합 : 자기 자본의 400% 이내

7) 지원조건 :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, 연리 5%

4. 가축계열화사업(공공)

1) 사업량 : 14개소(돼지 9개소, 닭 5개소)

2) 총사업비 : 39,439백만원(돼지 19,345백만원, 닭 20,094백만원)

3) 자금지원 대상자 :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회사업자로 선정된 자, 축산물종합처리장 지정업체

4) 지원조건

○용자비율 : 용자 70% 이내, 자담 30% 이상

○상환조건 :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, 연리 5~8%

5.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(공공)

1) 사업량 및 총사업비

○돼지고기 품질개선 : 4,000천두, 12,800백만원(보조)

○품질개선단지 운영자금 : 6,100백만원(용자)

○규격돈 구매사업 : 4,000천두, 38,400백만원(용자)

○냉장육 전문판매점 : 180개소, 13,500백만원(용자)

2) 지원대상

○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: 수출육가공업체와 규격돈 생산·공급계약을 체결한 품질개선단지, 농축산조합, 계열화업체의 참여농가

○규격돈 구매사업 : 규격돈 생산·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로서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원

○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개선 : 축산물종합처리장, 축협중앙회, 한냉, 일반브랜드업체에서 선정한 가맹점

3)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

○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

- 지원조건 : 연초에 육가공업체와 출하계약을 맺고, 지원기준에 적합한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도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

· A등급 : 7천원, B등급 : 5천원

- 지원기준 : 도체중이 박피기준 64~81kg(탕박기준 71~89kg), 유헨잔류물질 미검출(TLC검사 합격), 수태지의 경우 거세한 돼지, 도체등급판정이 A, B등급 이내

○규격돈 구매사업

- 지원조건 : 규격돈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의 30~40% 용자(연리 5%, 1년거치후 일시 상환)

- 지원대상 : 규격돈(도체중 요건, 거세수태지, TLC검사 합격)을 구매하는 육가공업체

○냉장육 판매점 시설개선

- 지원조건 : 매장면적 12평 기준이며, 12평 초과시 100백만원 지원가능(연리 5%, 3년거치 5년균분 상환)

- 자금의 용도 : 냉장육 판매, 보관, 가공, 진열 시설 및 인테리어

6.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(공공)

1) 공동방역사업단 지원

○사업량 : 80개소

○총사업비 : 2,800백만원

○지원대상자 :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에 의거 사업단을 설치한 시군의 축종별 사업단

○지원규모 : 개소당 35백만원이내 지원(예방약, 냉장고, 방역차량, 연막분무기, PC 등)

○지원조건 : 보조 70%, 자담 30%

2) 도축장 소독시설 지원

○사업량 : 35개소

○총사업비 : 1,677백만원(대출 1,174백만원, 자담 503백만원)

○지원대상 : 도축장 경영자(도축장 118개소)

○지원규모 : 개소당 32백만원이내(차량세척, 소독시설)

○지원조건 : 융자 70%, 자담 30% 이상(연리 5%,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)

7. 돼지 개량사업(공공)

1) 사업내용

○중돈능력검정사업 : 검정소 검정 4,680두(격리조기이유 2,400두)

○전문중돈업 육성사업 :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중돈업 등록업체중에서 원중돈농장을 선정하여 이들과 GP중돈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

2) 지원내용

○중돈능력검정사업

- 지원대상 : 대한양돈협회

- 총사업비 : 163백만원

- 지원조건 : 검정소 시설 및 개보수 총사업비의 70% 보조, 고능력 인공수정 활용 검정돈 낙찰가격의 10% 보조

○전문중돈업 육성사업

- 지원대상 : 선정된 전문중돈업 육성사업 대상자

- 총사업비('98~2000) : 종모돈·종빈돈·후보돈-1,938백만원, 육성돈-219백만원(원중돈 농장분 262백만원), 자돈 250백만원

- 지원조건 : 총사업비의 70% 융자, 30% 자부담(연리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) **養豚**

팩스 있으십니까?
한 장 받아보시지요.

- ❖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!
- ❖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...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.
- ❖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(1년에 회원 4만원/비회원 9만원...)

☎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
02) 553-3942/6